

##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

The historical meaning of social contract theory

- Comparison of social contract theory of Hobbes, Locke, Rousseau -

고 봉 진\*  
Ko, Bong-Jin

### 목 차

- I. 머리말
- II. 자연상태론
- III. 사회계약론
- IV. 맺음말
  - 사회계약론의 의의와 한계

### 국문초록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 토마스 홉스(리바이어던)와 존 로크(정부에 관한 두 개의 논문)로부터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 등의 사상가들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만드는 사고실험을 시도하였다. 홉스(1588-1679)가 '리바이어던'을 출간한 1651년부터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1762년에 이르는 한 세기는 '사회계약론'의 위대한 시대'였다.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의 이론은 자연상태론,

논문접수일 : 2014.02.12

심사완료일 : 2014.03.03

게재확정일 : 2014.03.05

\* 법학박사·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사회계약론, 국가론(통치론) 등에서 각각 다르다. 자연상태의 내용에 대한 차이는 사회계약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낳게 되고, 이는 사회계약에 의해 설립된 국가와 정치권력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한다.

하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의해 최근 부활하기는 했지만) 다음의 2가지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회계약은 한번도 체결된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성사된 사회계약이 없다면 시민들도 정부도 약속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만들려고 한 시도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은 주어진 자연법 질서나 신의 질서에 따라 인간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새롭게 사회질서를 만들어 보려고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을 통해 홉스와 로크와 루소는 개인이나 인간사회가 더 이상 자연이나 신에 의해 운명지워진 존재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주제어 : 홉스, 로크, 루소, 자연상태, 사회계약

## 1. 머리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 토마스 홉스(리바이어던)와 존 로크(통치론)로부터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 등의 사상가들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만드는 사고실험을 시도하였다.<sup>1)</sup>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출간한 1651년부터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출간된 1762년에 이르는 한 세기는 '사회계약론의 위대한 시대'였다.<sup>2)</sup>

홉스와 로크가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역사적 배경에는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1603-1714)에서의 왕당파와 의회파, 토니당과 휘그당의 싸움이 있었다.<sup>3)</sup> 홉스

1) Otfried Höffe(박종대 역), 「정의」(EjB, 2004/2006), 97면.

2)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김영사, 2007/2011), 133면.

3)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죽자, 제임스 1세가 즉위하여 스튜어트 왕조를 열었고, 1625년에

(Thomas Hobbes, 1588-1679)가 1651년에 발표한 '리바이어던'(Leviathan)은 정치철학에 있어 페라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저서로서, 홉스는 이전 정치철학의 흐름과 절연하고,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계약이론에 의거해서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근대 정치철학의 창시자로 간주된다.<sup>4)</sup> 정치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리바이어던'이지만, 이 책은 홉스에게 큰 불행을 가져왔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군주제를 주장하여 의회파로부터 배척당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이단적인 견해를 주장하여 국교회와 왕당파에게도 배척당하기 때문이다. 군주의 절대권력이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왕당파의 미움을 샀다.<sup>5)</sup>

로크(John Locke, 1632-1705)는 '통치론'을 1690년에 출판한다. 명예혁명은 통치론이 발간되기 2년 전인 1688년에 일어났고, 권리장전은 1년 전인 1689년에 만들어졌다.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는 법률 집행 및 과세 금지, 의회의 동의 없는 상비군 징집 등을 금했다. '통치론'의 출판은 명예혁명 후에 있었지만, '통치론'의 집필은 휘그당 소속인 존 로크가 토리당의 위협을 피해 1683년 네델란드로 피신하였을 때였다. 1679년 왕제(王弟) 요크공에 대한 왕위배제법안을 놓고 의회 내에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였는데, 제임스의 즉위를 인정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리당이 만들어지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휘그당이 만들어졌다. 요크공은 1685년에 제임스 2세로 즉위한다. 휘그당의 중심에는 존 로크가 심졌던 샤프츠베리(Shaffesbury) 백작이 있었다.<sup>6)</sup>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17세기 영국 스튜어트 왕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에,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은 17세기와 18세기의 부르봉 왕조와 관계가 있다. 영국의 17세기

---

아들 찰스 1세가 즉위하지만 1649년 크롬웰의 청교도혁명에 의해 처형된다(1628년 권리장전). 1649년부터 1660년까지 크롬웰의 공화정이 이루어지나, 1660년 찰스 2세가 왕정에 복귀한다. 1685년 찰스 2세를 이어 제임스 2세가 즉위하나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 추방된다(1689년 권리장전).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남편 윌리엄이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고, 1714년에는 스튜어트 왕가가 단절되고 하노버 왕가가 시작된다.

4) Wolfgang Kersting(전지선 역), 「홉스」, (인간사랑, 2006), 5면 이하.

5)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41면 이하.

6)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89면 이하.

와는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조(1589년 앙리 4세에 의해 수립됨)의 루이 13세(재위 1610-1643)와 태양왕 루이 14세(재위 1643-1715)에 의해 절대주의 왕권이 절정에 달한다. 루이 13세와 루이 14세의 시기는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의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데, 한쪽에서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절대군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루이 13세의 재위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30년 전쟁(1618-1648)을 통해 신성로마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대립했다. 17세기에 확립한 절대왕정은 18세기에 이르러 루이 15세(재위 1715-1774), 루이 16세(재위 1774-1792)의 시대에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 구체제)이 차츰 해체되면서 1792년 프랑스혁명에 의해 붕괴된다. 프랑스혁명의 이념은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디드로 등에 의해 약 반세기에 걸쳐 배양되었으며, 특히 루소의 인민주권론이 혁명사상의 기초가 되었다.<sup>7)</sup> 다만 루소의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및 진보에 대한 낙관적 신앙을 내세우는 계몽사상가들의 사상과는 대립되는 것이었다.<sup>8)</sup>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로크, 루소의 이론은 자연상태론, 사회계약론, 국가론(통치론) 등에서 각각 다르다. 자연상태의 내용에 대한 차이는 사회계약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낳게 되고, 이는 사회계약에 의해 설립된 국가와 정치권력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한다.<sup>9)</sup>

이 논문에서 필자는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교한 후에,<sup>10)</sup>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살피도록 하겠다.<sup>11)</sup>

7)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스 혁명' 참조.

8) 대표적으로 계몽주의자인 볼테르는 루소에 대해 "인간을 네 발로 기는 짐승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역자해설, 195면.

9)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김영사, 2007/2011), 116면.

10) 사회계약론에 대한 홉스, 로크, 루소의 주저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본고에는 홉스, 로크, 루소의 주저를 직접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통해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필자는 사회계약론에 대한 홉스, 로크, 루소의 주저를 살피며 있어 비교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작업에는 2차 문헌의 도움이 컸다는 점

## II. 자연상태론

### 1.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의 자연상태는 (잘 알려져 있듯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이다.<sup>12)</sup> 홉스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하였는데,<sup>13)</sup> 이러한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즉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sup>14)</sup> 하지만 재화의 한정성 때문에 경쟁(competition)은 불가피해지고,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 감정(불신, diffidence)을 품고 "자기보존"에 여념이 없게 된다.<sup>15)</sup> 자연상태에는 평등상태에서의 경쟁, 불신, 공명심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즉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로 빠져든다.<sup>16)</sup>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Homo homini lupus). 자연상태의 인간은 공동체 감정이 없으며,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은 원자적 인간이다.<sup>17)</sup> 자

도 아울러 밝힌다(예컨대 '통치론'의 공역자이기도 한 문지영 박사의 '국가론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 Jean-Jacques Rousseau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의 역자인 이환 교수의 역자해설은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이해하기 쉽게 잘 비교하고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

- 12) 홉스의 자연상태는 물론 가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Robert L. Arrington(김성호 역), 「서양 윤리학사」, (서광사, 1998), 257면. 홉스는 인간의 정념으로부터 이끌어낸 '자연상태'에 대한 자신의 추론이 전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73면. 하지만 자신의 추론이 경험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몇몇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73면.
- 13)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68면.
- 14)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69면.
- 15) Wolfgang Kersting(전지선 역), 「홉스」, (인간사랑, 2006), 131면 이하.
- 16)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71면.
- 17) 문지영, 「국가론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64면: 홉스는 자연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를 다음과 같이 비참하게 그리고 있다. "전쟁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 적인 상태, 즉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과는 불

연상태는 전쟁상태이며, 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보존'을 추구하게 된다.<sup>18)</sup>

홉스는 자기보존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구상함에 있어 '자연법과 자연권'을 새롭게 구성한다. 즉 홉스는 자기보존에 대한 인간의 관심에서 자연법과 자연권을 도출하고 있다.<sup>19)</sup> 홉스가 주장하는 제1의 자연법은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이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sup>20)</sup> 홉스가 주장하는 제2의 자연법은 평화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제1의 자연법으로부터 도출된다. 자기보존에 대한 자연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평화추구에 대한 제1의 자연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자기보존에 대한 자연권은 포기되어야 한다.<sup>21)</sup> 인간이 본래부터

확실하기 때문에 근로의 여지가 없다. 토지의 경작이나, 해상무역, 편리한 건물,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지표에 관한 지식, 시간의 계산도 없고, 예술이나 학문도 없으며, 사회도 없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72면.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정과 사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뿐이다."(174면) "정의, 불의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들과 관계있는 성질일 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그러한 전쟁상태에서는 소유(property)도, 영유(dominion)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획득 가능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며, 자기 것으로 유지 가능한 기간 동안 자기 것이다."(174면)

18)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69면.

19) Samuel Enoch Stumpf/James Fieser(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열린책들, 2008), 341면: 홉스가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홉스는 자연법론자가 아니라 법실증주의자임에 유의해야 한다. 홉스도 완전한 자연상태에서의 자연법은 법이라고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와 복종을 지향하게 하는 성질이라고 말하면서, 코먼웰스가 설립되고 나면 그것이 법이 되지만, 코먼웰스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아직 법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350면. 자연법은 자연상태에서는 무력하며, 자연법은 평화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Thomas Hobbes(이준호 역), 『시민론: 정부와 사회에 관한 기초철학』(서광사, 2013), 105-106면.

20)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77면.

가지고 있는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종식시키지 못한다. 제1의 자연법(평화를 추구하라)과 제2의 자연법(자연권을 포기하라)은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는데, 이로부터 제3의 자연법이 생겨난다. “신의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한다.”<sup>22)</sup>

## 2. 재판관의 부재

토마스 홉스와 마찬가지로 존 로크도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을 알기 위해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을 고찰한다.<sup>23)</sup> 존 로크에 따르면, 자연상태는 사람들이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will)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이다.<sup>24)</sup> 또한 자연상태에는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이 지배하고 있다.<sup>25)</sup>

하지만 존 로크의 자연상태에는 하나의 큰 결함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정법이 없고, 호소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점이다.<sup>26)</sup> 이러한 상황에

21) Thomas Hobbes(이준호 역), 「시민론: 정부와 사회에 관한 기초철학」(서광사, 2013), 51면.

22)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94면; Robert L. Arrington(김성호 역), 「서양 윤리학사」(서광사, 1998), 264면 이하.

23)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1면.

24)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1면: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이지만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13면).

25)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3면.

26)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자연상태에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이 없다. 비록 자연법이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는 명백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연구를 하지 않아서 그 법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

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게 된다. 공통된 호소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달리 재판관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요 집행자가 된다. “자연상태에서처럼 실정법이나 호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일단 개시된 전쟁상태는 무고한 자가 가능하면 언제라도 상대방을 살해할 권리를 가진 채 지속된다.”<sup>27)</sup> “만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모든 인류의 평화와 보존을 지향하는 자연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연법의 위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 법의 위반자를 처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sup>28)</sup>

로크의 자연상태는 언제라도 전쟁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홉스의 자연상태에 접근한다.<sup>29)</sup> “홉스의 자연상태를 특징짓는 공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것인 데 비해 로크의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위협은 권리들의 충돌 가능성과, 무엇보다 그것을 조정할 권위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30)</sup> 존 로크의 주장에서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주장하는 토마스 홉스와 아주 다른 부분은 존 로크가 재산권을 자연

---

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편파적이기 때문에, 자연법을 자신들이 관련된 특정한 사건에 적용할 때 자신들을 구속하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연상태에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 셋째, 자연상태에서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이 종종 결여되어 있다. [...] 그리하여 인류는 자연상태에 따르는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동안 단지 열악한 상황에 시달리게 되므로 급기야는 사회에 들어가려고 서두른다.”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120-121면.

27)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26면, 84면.

28)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14면: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창세기 9:6)라는 위대한 자연법 역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카인 또한 모든 사람이 그러한 범죄자를 살해할 권리가 있다고 너무나 확실한 나머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창세기 4:14)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가슴속에 너무나 명백하게 새겨져 있었다.”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17-18면.

29)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122면.

30)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123면.

권으로 주장한다는 점이다.<sup>31)</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로크가 소유권의 정당화를 사회상태가 아닌 자연상태에서 시도한다는 점, 소유권이 자연권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sup>32)</sup> 또한 존 로크는 모든 사물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한다.<sup>33)</sup>

### 3. 이상적인 자연상태

루소의 자연상태론은 홉스와 로크의 자연상태론과 극과 극을 이루는데, 이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이전에 나온 2권의 논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루소는 2번의 현상공모된 논문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구체화하고, 2번의 현상공모한(1번은 당선되고 1번은 떨어진) 논문을 '학문 및 예술에 관한 논고'와 '불평

- 31) 로크의 '자연권으로서 재산권' 주장은 미국 독립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 독립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과세권 문제였고("대표없는 곳에는 과세 없다."), 미국 독립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보고 국가의 목적은 재산의 보호에 있다는 로크의 이론을 활용하였다. Hans Welz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삼영사, 2001/2005), 207면.
- 32)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김영사, 2007/2011), 117면.
- 33) "비록 대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person)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 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어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의 것을 보태면, 그럼으로써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은 그에 의해서 자연이 놓아둔 공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의 노동이 부가한 무언가를 가지게 되며, 그 부가된 것으로 인해 그것에 대한 타인의 공통된 권리가 배제된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노동을 한 자의 소유물임이 분명하므로, 타인이 아닌 오직 그만이, 적어도 그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34-35면. 노동을 첨가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100부셀의 도토리나 사과를 주워모은 자는 그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그것들은 주워모으자마자 그의 재물이다. 그는 그것들이 상하기 전에 그것들을 사용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몫 이상을 취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은 셈이 된다. 그리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장하는 것은 부정직한 일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것들이 상해서 무용지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는 그것들을 이용한 셈이다."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통치론」(까치, 1996/2007), 51면.

등기원론'으로 출간한다. 1749년 디종 아카데미는 '학문과 예술의 부흥은 도덕적 순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공모하는데, 루소는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은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하였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문명의 발전은 풍속을 순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의 본래적인 덕성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당선된다.<sup>34)</sup> 1754년에 디종 아카데미는 '인간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공모하였고, 루소는 '학문 및 예술에 관한 논고'에서 전개한 논의를 발전시켜 현대사회의 타락과 불평등은 사회제도 그 자체에 기인된다는 결론의 논문을 제출한다. 루소의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이번에는 당선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1755년에 '불평등기원론'으로 발간된다.<sup>35)</sup>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토지를 울타리로 둘러싸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 자연상태의 인간 평등은 사라지고, 인간 불평등은 시작된다.<sup>36)</sup>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사회계약론'은 전작('학문 및 예술에 관한 논고'와 '불평등기원론')에 이어 루소가 50세 되던 해인 1762년에 발간되었다.<sup>37)</sup>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고, 사회는 그를 타락시킨다"는 것이 루소의 기본 생각이었다.<sup>38)</sup>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는 약간은

34)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역자해설, 184-185면.

35)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역자해설, 185-186면; Leo Damrosch(이용철 역), 「루소 - 인간 불평등의 발견자」(교양인, 2011), 349면 이하.

36) Jean-Jacques Rousseau(주경복, 고봉만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책세상, 2003/2012), 95면: "사회와 법률의 기원은 이러하거나 이러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사회와 법률은 약자에게는 새로운 구속을 부여하고 부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부여해 자연적 자유를 영원히 파괴해버리는가 하면, 소유와 불평등의 법률을 영구히 고정시키고 교활한 횡령을 당연한 권리로 확립시켜 그 후 온 인류를 몇몇 야심가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과 예속과 비참에 복종시킨 것이다." Jean-Jacques Rousseau(주경복, 고봉만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책세상, 2003/2012), 116면.

37) 이번에는 현상응모한 논문이 아니라 '정치제도론'이라는 대작을 쓰려는 도중에 나왔다. '정치제도론'이라는 방대한 작품을 쓰려고 착수하지만 힘에 부쳐 포기하고, 이 중에서 독자에게 제공하기에 적합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사회계약론'을 출판한 것이다.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역자해설, 204면.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자연상태를 지상낙원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상호적인 무관심이 지배하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sup>39)</sup> 하지만 인간의 자연상태는 인간의 사회성에 의해 곧 사회상태(시민사회)로 전환한다. 사회상태를 통해 인류 문명은 발전하기도 하지만, 발전된 인류문명은 인간을 타락하기도 한다. 루소는 사회가 인간이 타락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지만, 인간의 사회성은 사회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제 루소의 과제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상태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상태(시민사회)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홉스의 사회계약론이나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상태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루소는 소유권의 출현을 인간불평등의 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로크가 소유권을 자연권으로 구성했던 것과 상반된다.<sup>40)</sup>

### Ⅲ. 사회계약론

#### 1. 신의계약

홉스에 따르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자연상태의 모든 인간은 자기보존의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판관(判官)인 자연상태에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sup>41)</sup> 소수의 사람이 판관인 사회상태

38)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역자해설, 195면.

39) Hans Welz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삼영사, 2001/2005), 224면.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3면: 하지만 루소는 자신이 주장하는 자연상태가 토마스 홉스의 자연상태인 전쟁상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 원시적 독립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 평화나 전쟁 상태를 이룰 만큼 지속적인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서로 적이 아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물 간의 관계이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또 전쟁 상태란 사람 서로간의 단순한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소유권이 없는 자연상태에서나 법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회적 관계에서나 개인적인 또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란 존재할 수 없다.”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3면.

40) 이상영/이계승, 「법사상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2008), 167면.

41)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90면.

에서야 비로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홉스는 '영원불멸의 하나님'(immortal God)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mortal god)인 리바이어던(Leviathan), 코먼웰스(commonwealth)를 탄생시켰다.<sup>42)</sup> 홉스는 정의의 본질은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데 있으며, 계약의 유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충분히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의 수립과 더불어 시작되며, 또한 그때 비로소 소유권도 발생한다고 보았다.<sup>43)</sup> 홉스에 따르면, 자연상태 하의 인간들은 '코먼웰스'라는 인공 인간을 만들고,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한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 아래."<sup>44)</sup> 이는 자연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주권자(sov​er​eign)를 세우고, 그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주권적 권력(sov​er​eign power)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 설립의 계약이다.<sup>45)</sup> 이제 권리의 양도를 통해서 권리를 포기한 자는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일 권리를 포기한 자가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불의(injustice)이며, 권리침해(injury)에 해당한다.<sup>46)</sup> 코먼웰스를 설립한 이상, 신의계약에 의해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다.<sup>47)</sup> 주권의 설립에 의해, 모든 백성은 주권자의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의 본인이 된다.<sup>48)</sup> 주권자에 대한 백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말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주권자의 모든 행위에 권위를 부여한다, 혹은 나 자신의 행위로 간주한다."<sup>49)</sup>

홉스는 신의계약에 의해 세워지는 주권자의 권리를 막강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주권자는 신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42)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232면.

43)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95-196면.

44)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232면.

45)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222면, 232면.

46)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79-180면.

47)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235면.

48)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239면.

49)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290면.

힘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주권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침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백성들로부터 불의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주권을 가진 자는 백성에 의해서 처형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될 수 없고,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검열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 등도 모두 주권자에게 속하며, 백성 각자가 동료 백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권자에게 있다(그 규칙이 바로 사람들이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주권자는 사법권을 가지며,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코먼웰스와 전쟁 또는 강화할 권리가 있고,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모든 고문관, 장관, 행정관, 관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여 재산이나 영작으로 상을 수여하거나, 신체형, 재산형, 작위의 박탈 등으로 처벌할 권리가 있다.<sup>50)</sup>

홉스는 계약(contract)과 신의계약(covenant)을 구별하면서, 인간과 코먼웰스 간의 계약을 신의계약(covenant)이라고 칭한다. "권리를 서로 양도하는 것을 계약(contract)이라고 한다. 사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사물 그 자체를 양도 및 교부, 즉 인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 또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약정된 물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상대방의 채무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의 특정 시점에 이행하도록, 신뢰하고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은 채무를 먼저 이행한 선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약정(pact), 또는 신의계약(covenant)에 해당한다."<sup>51)</sup> 인간과 코먼웰스 간의 신의계약에서 자연권의 양도(또는 포기)는 현재 이루어지는 반면(그 결과 주권이 성립한다), 주권으로부터의 보호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이른바 '약속'의 성격을 띤다.<sup>52)</sup> 인민의 평화와 안전이야말로 리바이어던의 설립 목적이다.<sup>53)</sup> 복종의 목적은 보호를 얻는 데 있다.<sup>54)</sup> 자연상태의 인간과 리바이어

50)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239면 이하.

51)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81면.

52) '리바이어던'의 역자인 진석용 교수는 이러한 권리양도의 시차를 반영하기 위해 홉스가 'contract'(계약)가 아닌 'covenant'(신의계약)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역자 각주에서 말한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80-181면.

53)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251면: 홉스는 통치자를 리바이어

던 상호 간의 신의계약의 사슬은 그 자체로는 약하다. 그럼에도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끊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슬을 끊었을 때 생기는 위험 때문이다.<sup>55)</sup> 이 사슬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권자가 더 이상 백성을 보호할 수 없어 백성에게 자연보존의 자연적 권리가 발동하는 때이다. “주권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는,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 주권자의 손에서 지속되는 한, 그리고 오직 지속되는 동안에만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에게는 달리 아무도 보호해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연보존의 자연적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어떤 신의계약으로도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복종의 목적은 보호를 얻는 데 있다.”<sup>56)</sup>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자발적 행위인데, 모든 자발적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어떤 서약과 어떤 표시에 의해서도 결코 폐기 혹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권리들이 존재한다. 첫째, 폭력적 공격으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는 누구라도 포기할 수 없다.”<sup>57)</sup>

## 2. 신탁계약

로크는 ‘통치론’에서 정부의 목적을 각 개인이 정치사회를 수립하기 이전부

---

이어던(Leviathan)에 비유했는데, 이 용어는 ‘욥기’ 제41장에서 가져온 것이다(412면). 우리나라 성경 욥기 41장에는 ‘리워야단’으로 표현되어 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나라.” (제41장 33절, 34절)

54)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294면.

55)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282면.

56)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294면.

57)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80면: “자기보존 및 자기보호가 모든 권리포기 행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저항의 포기를 약속하는 신의계약은 무효로서 어떠한 권리 이전도 없으며, 또한 어떠한 채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190면. “신민은 부패한 재판관에게 자신들이 대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Thomas Hobbes(이준호 역), 『시민론: 정부와 사회에 관한 기초철학』 (서광사, 2013), 233면: 필자 논문의 심사자는 “폭력적 공격으로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에서 이러한 저항권의 존재가 국가로 하여금 구성원을 죽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즉 주권에 대한 법적 제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학문적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더 가지고 있던 자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는 데서 찾았으므로, 홉스처럼 정부의 권한이 어느 정도로 막강하며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점을 보이는 데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정부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sup>58)</sup>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이 사회로 들어가는 사회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 중에서도 시민 사회의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존이다.<sup>59)</sup> 자신들의 생명, 자유, 재산(fortune)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리와 재산(property)에 관한 명시적 규칙을 통해서 평화와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다.<sup>60)</sup>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the public)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political society) 또는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존재하게 된다. 그들은 사회에 또는 그것과 다름 없는 입법부에 사회의 공공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들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위임한다.<sup>61)</sup> 국가는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을 가지며(로크에 따르면 집행권과 연합권은 기능수행의 측면에서 이를 분리하여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기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 분립으로 볼 수 있다),<sup>62)</sup> 주권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다(국민주권론).<sup>63)</sup>

58)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김영사, 2007/2011), 142면.

59)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208면.

60)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84면, 130면.

61)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85면.

62) 로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말한 것처럼, 모든 공동체의 집행권과 연합권은 참으로 그 자체로서는 구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분리되거나 동시에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겨지는 경우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둘 다 그 행사를 위해서 사회의 힘을 요구하는데, 국가의 무력을 분리하여 별개의, 서로 독립된 기관에 맡기는 것, 또는 행정권과 연합권을 서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거의 실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공공의 힘은 상이한 명령권자들 하에 놓여지게 되며, 그것은 조만간 무질서와 파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141-142면: 로크에 따르면, 집행권과 연합권은 기능수행의 측면에서 이를 분리하여 상이한 사람들의 수중에 맡기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위에 인용한 로크의 텍스트와 함께 알려 주신 심사자께 감사드립니다.

63) 오세혁, 「법철학사」(세창출판사, 2012), 164면.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커다란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사회에서 확립된 법률이다.<sup>64)</sup> 공공이 선출하고 임명한 입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법률로서의 효력과 의무를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승인이 없으면 법률은 그것이 법률이 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사회 자체의 동의나 사회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의 동의가 없이는 사회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sup>65)</sup>

입법권은, 그것이 1인의 수중에 있건 또는 그보다 많은 사람들의 수중에 있건, 상시적으로 존재하건 또는 수시로 존재하건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이다.<sup>66)</sup> 하지만 입법권은 여러 제한이 따른다. 첫째,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며 또 그러한 권력이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입법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데 결합시킨 권력을 입법자인 개인이나 집회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기 전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에 양도한 것 이상의 권력이 될 수 없다.<sup>67)</sup> 그리고 그 권력은 그 최대한에서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된다.<sup>68)</sup> 둘째,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sup>69)</sup> 확립되고 선포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sup>70)</sup> 셋째,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sup>71)</sup>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sup>72)</sup>

입법권에 제한을 가하는 존 로크는 절대적 권력을 주장하는 토마스 홉스의

64)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27면.

65)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27면.

66)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28면.

67)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28-129면.

68)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29면.

69)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30면.

70)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32-133면.

71)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33면-136면.

72)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까치, 1996/2007), 136면.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들은 통치자에 관한 한 그는 절대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상황을 불문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가해와 부정 이상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저지른다면 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자들이 그러한 해악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즉각적으로 분열과 반란을 조장하는 목소리로 들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인간이 자연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법률의 구속하에 있어야 하지만, 그 한 사람만은 자연상태에 누리던 모든 자유를 여전히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권력에 의해서 증대시키고 또 무절제하게 사용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인간이 스킴크나 여우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심을 하면서도, 사자에게 잡혀먹히는 데는 만족하거나, 아니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sup>73)</sup>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으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 목적을 명백히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신탁은 필연적으로 철회되며, 그 권력은 그것을 내준 자들의 손에 되돌아가기 때문이다.<sup>74)</sup> 입법자들이 인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고자 기도할 경우 또는 인민을 자의적 권력하에 놓인 노예로 만들고자 할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인민과의 전쟁상태에 몰아넣는 것이며, 인민은 그로 인해 더 이상의 복종의무에서 면제되며, 무력과 폭력에 대비하여 신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공통의 피신처로 대피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입법부가 야심, 공포, 어리석음 또는 부패로 인해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73)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89-90면.

74)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143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에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sup>75)</sup> 따라서 아무런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가 사회에 그토록 필요한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한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sup>76)</sup>

로크가 옹호하는 저항의 권리는 두 가지 점에서 급진적이다. 우선 그것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sup>77)</sup> 또한 권리로서 인민의 저항은 단순히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 형태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좀더 근본적이며 과격한 방법, 곧 폭력적 저항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sup>78)</sup>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민의 저항권과 정부의

75)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208-209면.

76)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148면.

77)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151면: “탄압, 음모 또는 외국에의 양도로 자신들의 예전의 입법부가 없어졌을 때 인민들에게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어서 해악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때 구제를 기대해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노예가 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사슬로 묶여진 후에 그들에게 자유인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실사 가능하다고 해도 구제라기보다는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폭정(tyranny)에 완전히 속박될 때까지, 그것으로부터 도망갈 수단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폭정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207면.

78)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152면: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막는 방패만을 사용하는 자나 공격자의 오만함과 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지 않은 채 공손한 자세로 대처하는 자는 즉각적으로 저항의 밀천이 떨어질 것은 물론 그러한 방어가 그 자신에게 오히려 악화된 사태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저항을 해도 좋은 사람은 반드시 가격을 하는

해체를 본격적으로 정당화하기에 앞서 로크가 사회의 해체와 정부의 해체를 구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는 것이다. 둘 사이의 구분은 결국 로크가 정치사회와 정부를 구분해서 보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로크의 계약론이 사회계약과 통치계약이라는 두 가지 구분되는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 둘이 다른 것이라고 구분함으로써 정부의 해체가 곧 사회의 해체, 그러니까 자연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정부의 해체를 초래하는 인민의 저항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그리 대단히 급진적이거나 무질서와 혼란을 부르는 불온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두고자 함이었다.<sup>79)</sup>

### 3. 결합계약

루소는 사회계약이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하고,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있어 불평등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의해 그리고 법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sup>80)</sup> “루소는 먼저 ‘힘’의 논리에 의해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는 초기 사회의 모습을 그려 보여 준다. 강한 자가 지배자로 등장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노예나 다름 없이 예속되는 이 사회체제 안에 인간의 자유는 말살되고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자질도 소멸된다. 이에 대한 반대명제로서 루소는 성숙한 인간 사회의 기본 조건 즉 ‘사회계약’의 이념을 제시한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면 한 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과 조건들에 따라 이를 수립하는 것 - 이것이 사회계약의 정신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모든 사람의 동의’이며 말하자면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 자유(그리고 이 자유에 내포된 권리)에 입각한 ‘주권’의 개념이다.”<sup>81)</sup>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220-221면.

79)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149-150면.

80)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30-31면.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은 사회를 형성하는 결합계약(문자 그대로의 사회 계약)과 정부를 만드는 정부계약(통치계약)으로 구분되는데,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에 의해 수립된 공동체가 통치자와 피치자의 구분 없이 자치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결합계약 만이 있을 뿐 정부계약(통치계약)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sup>82)</sup> 이는 주권의 소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다.<sup>83)</sup> “정부의 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sup>84)</sup> “그는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의 절대주의적인 국가론과, 영국을 본보기로 삼는 몽테스키외의 입헌왕정에 반대하고, 급진적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주창했다. 즉 의회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 만약에 정말로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면, 그 국민들은 제네바의 본보기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때그때 표결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도, 살아 있는 원래적인 인격(개인)도 아니고, 문화의 굳어져 있는 제도들, 즉 정당·신분·단체 등으로 된다. 경험에 비춰보자면 이런 제도들은 국민보다 더 커져서,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 자체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가를 시민들의 의지가 지탱해주고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인 계약 이상의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은 시민인 이상, 평등하고 자유롭고 선한 인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sup>85)</sup> 루소는 사회계약이 답을 주어야 할 근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한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할 것.”<sup>86)</sup>

루소의 사상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익의 공동성에 기초한

81)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역자해설, 210-211면.

82)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김영사, 2007/2011), 134면;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2008), 168면.

83)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2008), 168면.

84)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26면.

85) Johannes Hirschberger(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 하권·근세와 현대」(이문출판사, 1983/2007), 340-341면.

86)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9면.

‘일반의지’에 대한 것이다. 루소는 이익의 공동성에 기초한 일반의지에 의해 통치되지 않고 잘못된 정부에 의해 통치된다면, 평등은 피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평등은 가난한 자를 가난 속에 그리고 부자를 약탈 속에 머물게 하는 데 쓰일 뿐이고, 법은 유산자에게는 유익하고 무산자에게는 해로운 것이 된다.<sup>87)</sup> 따라서 루소는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이익의 공동성에 기초한 ‘일반의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의사를 전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 오히려 그들을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이다. 공동이익 아래에서 각자는 자기가 타인에게 부과하는 계약 조건에 자신도 필연적으로 복종해야 하며, 이것은 이익과 정의의 훌륭한 일치로서 공동의 결의에 공정성을 부여한다.<sup>88)</sup>

하지만 한스 벨젤(Hans Welzel)은 루소가 이성을 과대평가했고, 욕정과 집단이익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한다.<sup>89)</sup> 또한 일반의지라는 것이 형식적인 원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사람들이 일반의지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욕, 집단이익 등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바른 것을 직접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기망적인 몽상으로 남을 것이다. 균등한 공동성이라는 형식적인 원리는 내용적으로 아주 상이한 많은 이익들에 대해 열려있다. 그것들 중 어떤 이익이 자칭하는 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는 참된 선인지에 대해서는 이 형식원리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sup>90)</sup> 다만 루소 또한 ‘일반의지’를 현실에 실현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국가에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sup>91)</sup> 반대로 루소는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오해를 받았다. 개인은 일반의지를 위해 개별의지의 관철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체주의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87)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31면.

88)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4면.

89) Hans Welz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2005), 229면.

90) Hans Welz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2005), 230면.

91)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역자해설, 203면, 215면.

## IV. 맺음말

### - 사회계약론의 의의와 한계

근대에 사회계약론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의 해체가 자리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그의 책 ‘형이상학’에서 목적론적 세계관의 중심개념인 ‘엔텔레케이아(Entelecheia)’를 상세하게 다룬다. 플라톤은 이데아가 개체로부터 동떨어져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가 개체에 내재한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형상들이 구체적인 사물과 분리되어 초월해서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형상들은 구체적인 사물과 분리되어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물에 내재하여 함께 존재한다.<sup>92)</sup>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속에 내재하는 형상(에이도스)을 ‘엔텔레케이아(Entelecheia)’라고 지칭하였다. 그 의미는 ‘목적에 있어 있는 것’, 즉 목적을 달성하여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엔텔레케이아’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생성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것이다.<sup>93)</sup> 일체의 생성은 목적에 의해서 정해져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조정된다.<sup>94)</sup> “이제 세계가 이데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들이 세계 안에 있다. 형상은 그 보편성 그대로 나타나지를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서 실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플라톤에게 있어서처럼 제2의 실체가 아니라, 제1의 실체가 세계 안에 널리 있게 된다. 그리고 형상이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 형상이 시간과 공간 안에 실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플라톤의 에이도스와 아

92) Hans Wess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삼영사, 2001), 48면.

93) Johannes Hirschberger(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 하권·근세와 현대」(이문출판사, 1983/2007), 246면.

94) Hans Wess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삼영사, 2001), 49면: 아리스토텔레스는 “(1) 그것은 무엇인가? (2)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3) 그것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4) 그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지는가?”에 따라 ‘형상인(因)’, ‘질료인’, ‘작용인’, ‘목적인’이라는 4가지 원인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조각의 경우 4가지 원인은 (1) 입상, (2) 대리석으로, (3) 조각가에 의해, (4) 장식용이다. Samuel Enoch Stumpf/James Fieser(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열린책들, 2008), 147-148면.

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 사이의 차이이다.”<sup>95)</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과 변화를 낳는 내재적인 힘이 없다면, 영원한 실체를 가정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플라톤을 반박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현실과 초월한 실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생성과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는 현실 속에 내재하여 현실을 움직이는 힘으로서 현실의 생성과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에는 플라톤이 현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이데아를 통해 현실의 생성과 운동을 설명하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sup>96)</sup>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형상들이 완전히 분리된 채 존재한다는 가정에 의해 무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반문하며, 플라톤의 이데아는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난 사물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sup>97)</sup>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제7권과 제8권에서 “질료와 형상”에 대해 다룬 후에, ‘형이상학’ 제9권에서 “가능태-현실태” 문제를 다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화되지 않고 규정되지도 않는 무엇, 그리고 그것과 결합하여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무엇을 ‘질료’(그리스어로 ‘힐레hyle’)라고 불렀고, 사물의 목적으로서 질료로 하여금 현실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힘을 ‘형상’(에이도스, 그리스어로 ‘모르페morphe’)이라고 불렀다.<sup>98)</sup>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데, 이때 사물의 형상이 그것의 목적으로 설정했던 것을 실현하게 된다. 만물 속에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데, 사물들이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가능태와 현실태를 구분하게 하였다. 변화의 궁극적인 양식은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변화인데, 이때 이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태를 가능태에 선재(先在)하는 것으로 주장했다는 점이다.<sup>99)</sup>

95) Johannes Hirschberger(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 상권·고대와 중세』(이문출판사, 1983/2007), 247면.

96) Johannes Hirschberger(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 상권·고대와 중세』(이문출판사, 1983/2007), 253면.

97) Samuel Enoch Stumpf/James Fieser(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열린책들, 2008), 146면.

98) Hans J. Störig(박민수 역), 『세계 철학사』(이름, 2008), 270면.

‘엔텔레케이아(Entelecheia)’로 대표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이후 스토아철학과 아퀴나스의 스콜라철학을 통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된다. 중세시대에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이론이 등장하지 못했고, 등장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고대와 중세를 지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근대에 들어 둔스 스코투스와 윌리엄 오컴에 의해 제기된 주의주의와 유명론, 그리고 인과법칙에 기초한 자연과학의 발전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특히 근대 초기에 이르러 자연과학의 발달에 자극받아 기계론적 세계관이 등장했고, 목적론적 세계관은 기계론적 세계관의 주적(主敵)이 된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따르는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은 인과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을 낳았고, 이는 만물에 목적이 있어 목적이 실현된다는 목적론적 세계관과 대립할 수 밖에 없었다.<sup>100)</sup>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부정된다. 홉스는 유명론에 기초하여, 옛날 도덕 철학자들의 책에 나오는 ‘궁극목적’(finis ultimus)이나 ‘최고선’(summum bonum) 따위는 없다고 보았다.<sup>101)</sup> 대신에 자신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등장시켜 욕구, 혐오, 기쁨, 고통, 공포, 희망과 같은 인간의 ‘정념(passion)에 주목하였다.<sup>102)</sup> “홉스에 있어서는 운동하는 물질 세계 외에 도덕적 세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명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선호하고 추구하는 경향과 회피 및 혐오라는 두 개의 심리적 기본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선이나 악, 추함 등과 같은 개념은 객관적 도덕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관적 심리에 관한 것이다.”<sup>103)</sup> 토마스 홉스의

99) Samuel Enoch Stumpf/James Fieser(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열린책들, 2008), 148-149면; Aristoteles(김진성 역), 「형이상학」(EJB, 2007/2010), 393면 이하.

100) Johannes Hirschberger(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 하권·근세와 현대」(이문출판사, 1983/2007), 49면, 60-61면.

101)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37면. ‘궁극목적’과 ‘최고선’ 등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 및 중세신학의 주제였다.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137면.

102)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나남, 2008), 76면 이하.

103) Wolfgang Kersting(전지선 역), 「홉스」(인간사랑, 2006), 88면.

정치철학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정념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다를 뿐 아니라,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차이를 드러낸다.<sup>104)</sup> 로크와 루소에 의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부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위적인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구조를 만드는 사상이고, 이는 주어진 목적에 맞추어 사회를 적응시키려는 목적론적 결정론과는 상반된다. 목적론적 결정론은 목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질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사회 또한 이에 맞추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스토아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의 확장을 볼 수 있으며, 우리는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스토아철학과 매우 상반된 사회를 구상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sup>105)</sup>

홉스, 로크, 루소에 의해 사회계약론은 전성기를 누렸지만, 다음의 2가지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계약론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최근 존 롤스의 정의론에 의해 다시 사회계약론은 부활하였다.<sup>106)</sup>). 사회계약은 한번도 체결된 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성사된 사회계약이 없다면 시민들도 정부도 약속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는 이유이다.<sup>107)</sup> 그럼에도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

104)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따르면, 국가공동체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삶을 추구하게 된다. Wolfgang Kersting(전지선 역), 『홉스』(인간사랑, 2006), 18면, 24면;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김영사, 2007/2011), 53면, 59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부정하는 홉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국가공동체를 구상한다. 홉스에 따르면, 국가공동체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105) 스토아철학의 중심되는 관념은 신이 만물에 내재해 있다는 범신론으로, 스토아 철학은 모든 존재의 총체와 신의 일치론을 주장하였다. Hans J. Störig(박민수 역), 『세계 철학사』(이룸, 2008), 318면. 스토아 철학은 세계는 신이 부여한 목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과 사물은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신들이 하는 일들은 섭리로 가득 차 있으며, 만물은 섭리에서 흘러나온다. Marcus Aurelius(천병희 역), 『명상록』(숲, 2005), 33면. 이처럼 목적론적 결정론은 스토아 철학의 세계상에 내재해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엔텔레케이아(Entelecheia) 사상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106)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해 사회계약론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논의로는 한국사회·윤리연구회 편, 『사회계약론 연구』(철학과 현실사, 1993), 173면 이하(제2부 계약론의 현대적 전개).

107) Will Kymlicka(소병철 역), 『사회계약론의 전통』, in: Peter Singer(김성환/김성호/소병철/

회의 기본구조를 만들려고 한 시도는 역사적으로 대단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은 주어진 자연법 질서나 신의 질서에 따라 인간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사회계약을 통해 새롭게 사회질서를 만들어 보려고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을 통해 홉스와 로크와 루소는 개인이나 인간사회가 더 이상 자연이나 신에 의해 운명지워진 존재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sup>108)</sup>

## 참고문헌

-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2011)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2008)  
오세혁, 「법철학사」 (새창출판사, 2012)  
Aristoteles(김진성 역), 「형이상학」 (EJB, 2007/2010)  
Robert L. Arrington(김성호 역), 「서양 윤리학사」 (서광사, 1998)  
Leo Damrosch(이용철 역), 「루소 - 인간 불평등의 발견자」 (교양인, 2011)  
Johannes Hirschberger(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 하권·근세와 현대」 (이문출판사, 1983/2007)  
Johannes Hirschberger(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 하권·근세와 현대」 (이문출판사, 1983/2007)  
Thomas Hobbes(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Thomas Hobbes(이준호 역), 「시민론: 정부와 사회에 관한 기초철학」 (서광사, 2013)

---

임건태 역), 「규범윤리의 전통」 (철학과현실사, 2005), 74면: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그것이 실제적인 약속을 판명하려고 시도한다면 역사적으로 부조리하거나(historically absurd), 그것이 순전히 가상적인 약속을 확립하려고 시도한다면 도덕적으로 무의미한(morally insignificant) 것이 된다. Will Kymlicka, 사회계약론의 전통, in: 한국사회·윤리연구회 편, 사회계약론 연구 (철학과 현실사, 1993), 15면.

108) Will Kymlicka(소병철 역), 사회계약론의 전통, in: Peter Singer(김성환/김성호/소병철/임건태 역), 「규범윤리의 전통」 (철학과현실사, 2005), 72면.

- Otfried Höffe(박종대 역), 「정의」 (EjB, 2004/2006)  
Wolfgang Kersting(전지선 역), 「홉스」 (인간사랑, 2006)  
Will Kymlicka(소병철 역), 사회계약론의 전통, in: Peter Singer(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역), 「규범윤리의 전통」 (철학과현실사, 2005)  
John Locke(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2007)  
Jean-Jacques Rousseau(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Jean-Jacques Rousseau(주경복, 고봉만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2012)  
Peter Singer(김성한/김성호/소병철/임건태 역), 「규범윤리의 전통」 (철학과현실사, 2005)  
Hans J. Störig(박민수 역), 「세계 철학사」 (이름, 2008)  
Samuel Enoch Stumpf/James Fieser(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열린책들, 2008)  
Hans Welzel(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2005)

[Abstract]

##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social contract theory

- Comparison of social contract theory of Hobbes, Locke, Rousseau -

Ko, Bong-Ji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Lawschool*

When the teleological view of the world of Aristoteles began to disintegrate, many thinkers tried thought experiment with the social contract theory.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au are three great philosophers of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ir theories we can find the

difference of theory construction. The theoretical difference of the nature condition leads to the theoretical difference of the social contract. This explains why their explanations of state and political power are so different.

But the heyday of social contract theory is over. There are two main reasons. We never make a social contract once. If we don't have a social contract, we are not bound by a social contract. The government is also not bound by a social contract.

Nevertheless Attempts to establish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have significant meanings.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opposes the attempt to establish the social order along with the nature law or the divine order. With the new theory of social contract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au advocate that human being and human society are not preordained by the nature or God.

**Key words** : Thomas Hobbes, John Locke, Jean-Jacques Rousseau, nature condition, social contract